

부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9) 상정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9)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강 성 모)

가. 제안이유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4. 28. 공포·2006. 10. 29. 시행)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의 구역과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인정시장의 기준, 변경신청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정함. (안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 및 제29조)
-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부터 제40조까지)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장의 구역 기준은?	○ 등록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 근거하고, 인정시장은 규칙 제12조에 근거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으로 정함.
○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주차장 등 편의시설물 관리의 주체는?	○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을 맺은 자 또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의결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4. 28. 공포·2006. 10. 29. 시행)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의 구역과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인정시장의 기준, 변경신청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부터 제40조까지)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 **첨 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7.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市場)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市場)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市場) 소유자 또는 시장(市場)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

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및 비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

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市場)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재래시장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은 인정시장이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市場) 또는 시장(市場)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市場)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市場)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9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시장은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市場)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였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市場)에 관한 자료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市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도·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도·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및 도·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토지 및 건축물(상인이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도·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도·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뉴타운지구”라 한다)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타원형·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제32조(시설물의 관리) ① 시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부

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주차장 조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3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8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변상의 책임 등) 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

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1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4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4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부천시통보용)

영수증
(납부자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입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입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입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입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농협,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 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수입일 부인	
부 천 시 장 (인)				부 천 시 장 (인)				부 천 시 금 고 귀 하				부 천 시 금 고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부천시통보용)			영수증 (납부자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조제○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부 천 시 장 (인)			부 천 시 장 (인)			부 천 시 금 고 귀하			○○은행 ○○지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남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신청인 (인)</p>			
부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현행 조례]

부천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06. 01. 13 조례 제21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50개 이상의 점포(공설시장의 경우 점포 또는 구획으로 한다)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다. 부천시장이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으로 개설(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4.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물류시설(통합콜센터, 공동창고 및 작업장) 및 고객편의센터 등을 말한다.
5. “주요시설물”이라 함은 상인과 이용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 또는 공공시설로서 편의시설과 아케이드(이하 “비거리개”라 한다),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 도로, 상가건물 등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에 의한 사업으로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가. 영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설치·개량·보수·수선·확장 및 구조의 변경 등을 말한다)
 - 나. 영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시장 환경개선사업
 - 다. 영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천시장
 - 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부천시장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 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장이 보조금을 이전하여 사업을 집행한 바 있는 「민법」·「상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단·재단법인·조합(이하 “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업을 위탁한 번영회 대표자

8. “토지등”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
9.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10.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11.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기준 및 운영·관리

제3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시장구역은 영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아니한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수 또는 건축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시장의 철회) ①부천시장은 인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②부천시장이 재래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보 또는 부천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시장의 관리·운영)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시장 대표자는 인정시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제6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시장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 및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편의 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5.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당면사업 추진
6.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부천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

제7조(인정시장 변경신청)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시장명 변경
 2. 대표자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인정시장면적(토지면적,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부천시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교체) 상인회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자를 교체하고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6조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5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할 때
 4.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9조(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①관리자는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 제11조(보고 등) ①부천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자에게 인정시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규모, 업종별 점포수, 소유형태, 회원수, 종사자수,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의 변동사항
 2. 공부상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가 기재된 시장구역내 상인 명부
 3. 시장 전체 매출액, 점포당 평균매출액, 임대료, 공점포 발생현황, 1일평균 이용객
- 제12조(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 설치기준)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5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원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제1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제2조제6호가목에 의한 부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따른 시장의 구역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편의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3. 특별조치법(2005년 3월 1일 이전까지를 말한다)에 의하여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제2조제6호나목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장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편의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천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조제6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편의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교육시설(다만, 개별점포 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2. 법인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밖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편의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교육 및 행사공간 등

3. 제2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천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물의 관리) ①부천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시장법인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부천시장은 제2항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①부천시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주차장 조례」·「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부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부천시장에게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부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③제1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①부천시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관리자와 제17조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부천시장은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변상의 책임 등) 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부천시장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제24조(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 가. 부천시장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 육성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 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재래시장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되는 지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26조(사업시행구역선정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부천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부천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부천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토의에 부치기 전에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부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이하 “심의”라 한다)을 거쳐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 및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28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30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설립인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반·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판매시설 m², 주거시설 m², 업무시설 m², 기타시설 m²),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m², 용역업 매장 m², 공동사용시설 면적 m²)
- ④조합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부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시장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부천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자추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33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부천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부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할 것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불허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시장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할 것

제34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또는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또는 대규모점포 관리자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제35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다만, 부천시장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의 자산 및 전문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에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 제36조(상인회의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시장안의 전체 상인을 상인회 구성 대상으로 하여 부천시장에게 등록할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역 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상가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의 인정시장의 경우 건물배치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직렬 또는 정방형으로 연결되는 구역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그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상인으로 구성
- ②부천시장은 시장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보 또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부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시장상인회 변경등록 신청)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상인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변경
 2. 대표자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업무구역 변경
 5. 시장명 변경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부천시장은 상인회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39조(등록의 철회) ①부천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부천시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보 또는 부천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부천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부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부천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완료 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42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가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부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45조(준용) ①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부천시 주차장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및 영과 규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